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8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09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왕정순,
우형찬, 이영실, 이원형,
홍국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 현 고립청년 실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자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 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14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
는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신설></u></p> <p>2. ~ 5. (생략)</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신설></u></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u></p> <p>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u></p>

제8조 ~ 제12조 (생략)

<신설>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3100600000014

미참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기덕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06.

회신일 : 2023.10.10.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제2호 실태조사, 제14조(포상)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 단, 실태조사는 제7조에 따라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포상)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